

의안 번호	18-83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 부여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 5년 부여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마.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회 심의 의결(2018.8.27. ~ .31.)

2) 입법예고 : 2018. 9. 14. ~ 2018. 10. 4.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 동의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18.10.11.)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7)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조”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을”을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설치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수익

제4조제1호바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등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금액에 대하여는”을 “금액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p> <p style="margin-left: 20px;">가. ~ 마.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바. 기타 잡수입</p> <p>2.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9조----- -----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설치 및 ----- -----.</p> <p>제2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p> <p>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세입) ----- -----.</p> <p>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수익</p> <p style="margin-left: 20px;">가. ~ 마.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바. 그 밖에 --</p> <p>2. (현행과 같음)</p>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예비비 등 기타

제6조(일시차입)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
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① (생략)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의 예에 따른다.

제5조(세출) -----
-----.

1. (현행과 같음)
2. ---- 등

제6조(일시차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해당 -----
-----.

제7조(잉여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금
액은 -----
-----.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장민호
연락처	02-3153-8586